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760
------	------

2021.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0월 12일, 김인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1. 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현을 일괄 정비 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에 불구하고”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 “~에도 불구하고”로 순화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여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에 불구하고”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 “~에도 불구하고”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760건(2021.08.09. 조사일 기준) 중 53건을 대상으로 100건의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음[참고자료1].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순화안
가도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계리하다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공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기타	그 밖의, 그 밖에
기하다	도모하다, 꺾하다, ~를 바탕으로 하다, 기하다
부착하다	붙이다, 부착하다
당해	해당, 그
명하다	처분을 하다, 명하다
미불	미지급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올리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포함하여 계산하다
응(응)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자(者)	사람, 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2017.12.)

-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와 용어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서는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¹⁾되어 제명의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된 조문과 자구가 있으며,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6건을 추가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2019.12.)에서 “기타”, “당해”, “부의하다”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했던 용어로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본식 한자어가 아닌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분류되어 정비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개정대상 중 3건²⁾의 조례는 2019년에 이미 개정·공포³⁾되었으므로 일괄정비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함⁴⁾.

〈수정의견〉

조례안	수정의견
<u>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u>	<u>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u>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삭제>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9조 ~ 제11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휴일 기타공사”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로 한다.
제14조 ~ 제21조 (생략)	제13조 ~ 제20조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삭제>

- 2) 안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안 제22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안 제43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서울시보 제3559호(2019.12.31.), 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김인제의원 발의)
- 4) 이 중 2건(제9조, 제43조)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여전히 현행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제23조 (생략)

제24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 제33조 (생략)

제34조(「서울특별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익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익안건 등을”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로 한다.

제35조 ~ 제42조 (생략)

제43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 ~ 제53조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 (조례안 제23조와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로 한다.

제23조 ~ 제31조 (조례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2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익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익안건 등을”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로 한다.

제33조 ~ 제40조 (조례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41조 ~ 제50조 (조례안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제51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부익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

	<p><u>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u></p>
<p><신설></p>	<p><u>제5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u></p>
<p><신설></p>	<p><u>제55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u></p>
<p><신설></p>	<p><u>제5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4항 중 “부외안건”을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한다.</u></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어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이미 개정·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수정함.
- 2019년에 이미 개정·공포된 3건의 조례를 삭제하고(안 제9조, 안 제22조, 안 제43조), 조문의 순서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53조까지 → 수정 후 안 제1조부터 안 제50조까지).
-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6건의 조례를 추가함(수정 후 안 제51조부터 안 제56조까지).

-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안 제24조, 안 제34조 (수정 후 안 제12조, 안 제22조, 안 제32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1]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제9호	기타 → 그 밖에
		제32조제2항제7호	
제2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3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제1항	부의한 → 회의에 부친
		제4조제2항	부의안건 → 회의에 부칠 안건
		제9조제1항	부의하여야 → 회의에 부쳐야
제9조제2항			부의를 받은 →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제4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6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5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기타 → 그 밖에
		제14조제2항	당해 → 해당
제6조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제4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본문	기타 → 그 밖의
제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제6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5항	
		제33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9조제2항	당해 → 해당
제10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 명칭과 관계없이
제11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13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2조제4항	기타 → 그 밖의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0조제3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제1의2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5항	
		제39조제7항	
		제54조제5항	
		제54조제6항	
		제54조제7항	
		제54조제8항	
		제55조제3항	
		제55조제4항제2호	
		제55조제4항제3호	
		제55조제5항	
		제55조제11항	
		제55조제12항	
제55조제13항			
제55조제15항			
제55조제18항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	기타 → 그 밖에
		제18조제1항제3호	기타 → 그 밖의
제18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	
제20조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4호	부의하는 → 회 의에 부치는
제21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당해 → 해당
제22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기타 → 그 밖에
		제20조 본문	기타 → 그 밖의
제23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당해 → 해당
제24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기타 → 그 밖의
제25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6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부의하는 → 회 의에 부치는
		제8조제2항제2호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27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28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기타 → 그 밖의
제29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30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	기타 → 그 밖에
제31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33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9호마목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34조	서울특별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6조제4항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제35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2호가목	기타 → 그 밖의
		제5조제2항제2호라목	기타 → 그 밖에
제36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8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11조제3항	부의사항 →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제3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본문	
제38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기타 → 그 밖에
제39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0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41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2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제4호	기타 → 그 밖에
		제15조제4호	
제43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당해 → 해당
		제16조 본문	
제44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45조	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6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당해 → 해당
제47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본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8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2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4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호	당해 → 해당
		제10조제2항제3호	기타 → 그 밖에
		제11조제3항제3호	기타 → 그 밖의
		제12조제3항	당해 → 해당
제50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51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기타 → 그 밖의
제52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60
----------	---------

제안년월일 : 2021년 11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어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이미 개정·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수정함.
- 2019년에 이미 개정·공포된 3건의 조례를 삭제하고(안 제9조, 안 제22조, 안 제43조), 조문의 순서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53조까지 → 수정 후 안 제1조부터 안 제50조까지).
-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6건의 조례를 추가함(수정 후 안 제51조부터 안 제56조까지).

-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안 제24조, 안 제34조 (수정 후 안 제12조, 안 제22조, 안 제32조)).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로 한다.

안 제13조(수정 후 안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를 ““공휴일 기타공사”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로 한다.”로 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42조까지를 각각 안 제21조부터 안 제40조까지로 한다.

안 제24조(수정 후 안 제2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를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로 한다.”로 한다.

안 제34조(수정 후 안 제32조) 제목과 본문의 “서울특별시”를 각각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안 제43조를 삭제하고, 안 제44조부터 안 제53조까지를 각각 안 제41조부터 안 제50조까지로 한다.

안 제51조부터 안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51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5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안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안 제5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안 제55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 을 “그 밖의 수입” 으로 한다.

안 제5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안건” 을 “회의에 부칠 안건”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u></p> <p>제1조 ~ 제8조 (생략)</p> <p><u>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u></p> <p>제10조 ~ 제12조 (생략)</p> <p><u>제13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u></p> <p>제14조 ~ 제21조 (생략)</p> <p><u>제22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u> <u>제2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u></p> <p>제23조 (생략)</p>	<p><u>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u></p> <p>제1조 ~ 제8조 (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p>제9조 ~ 제11조 (제정안 제10조부터 제정안 제12조까지와 같음)</p> <p><u>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조제4항 중 “공휴일 기타공사”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로 한다.</u></p> <p>제13조 ~ 제20조 (제정안 제14조부터 제정안 제21조까지와 같음)</p> <p><삭제></p> <p>제21조 (제정안 제23조와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24조</u>(「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p> <p><u>제25조 ~ 제33조</u> (생략)</p> <p><u>제34조</u>(「서울특별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u>서울특별시</u>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로 한다.</p> <p><u>제35조 ~ 제42조</u> (생략)</p> <p><u>제43조</u>(「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3항 및 제16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p> <p><u>제44조 ~ 제53조</u> (생략)</p>	<p><u>제22조</u>(「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로 한다.</p> <p><u>제23조 ~ 제31조</u> (제정안 제25조부터 제정안 제33조까지와 같음)</p> <p><u>제32조</u>(「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u>서울특별시의회</u>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로 한다.</p> <p><u>제33조 ~ 제40조</u> (제정안 제35조부터 제정안 제42조까지와 같음)</p> <p><삭제></p> <p><u>제41조 ~ 제50조</u> (제정안 제44조부터 제정안 제53조까지와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p>제51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p>
<신설>	<p>제5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신설>	<p>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p>
<신설>	<p>제5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신설>	<p>제55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4항 중 “부의안전”을 “회의에 부칠 안전”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와 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 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의한” 을 “회의에 부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안건” 을 “회의에 부칠 안건”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를 받은” 을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제1호에 불구하고” 를 “제1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를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8조제5항, 제82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각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를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를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
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휴일 기타공사” 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 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2호에 불구하고” 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
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서에 불구하고” 를 “단서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3항 중 “제2항에 불구하고” 를 각각 “제2항에도 불구
하고” 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의2호 중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를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9조제5항과 제7항, 제5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8항과 제5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8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본문에 불구하고” 를 각각 “본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를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항에 불구하고” 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수입” 를 “그 밖의 수입”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2호 중 “부의하는” 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호에 불구하고” 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마목 중 “나목에 불구하고” 를 “나목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6호에 불구하고” 를 “제6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를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을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부의사항” 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24조 본문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본문에 불구하고” 를 “본문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신청순위에 불구하고” 를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7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3항에 불구하고” 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12조제3항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 을 “그 밖의 수입”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안건” 을 “회의에 부칠 안건”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